

총동아리연합회칙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1조 ~ 제5조
제2절 회원	제6조 ~ 제8조

제 2 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 ~ 제17조
제2절 동아리 총회	제18조 ~ 제25조
제3절 동아리 총투표	제26조 ~ 제32조
제4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3조 ~ 제45조
제5절 동아리운영위원회	제46조 ~ 제57조

제 3 장 집행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제58조 ~ 제62조
제2절 집행위원회	제63조 ~ 제67조의2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8조 ~ 제72조

제 4 장 자치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73조 ~ 제76조
제2절 중앙동아리	제77조 ~ 제81조
제2절의2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제81조의2 ~ 제81조의5
제3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제82조 ~ 제86조
제4절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제87조 ~ 제90조
제5절 단과대학 동아리	제91조 ~ 제92조
제6절 일반동아리	제93조 ~ 제96조

제 5 장 특별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7조 ~ 제103조
제2절 법제위원회	제104조 ~ 제108조
제3절 총동아리연석회의	제109조 ~ 제112조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	제112조의2 ~ 제112조의8

제 6 장 심사

제1절 등록 및 승격	제113조 ~ 제121조
제2절 징계 및 포상	제122조 ~ 제129조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제129조의2 ~ 제129조의6
----------------	-------------------

제 7 장 선거	제130조 ~ 제136조
----------	---------------

제 8 장 재정	제137조 ~ 제142조
----------	---------------

제 9 장 법제	제143조 ~ 제152조
----------	---------------



개정 연혁

연도미상 제정

1996.09.30 일부개정
2007.03.29 일부개정
2008.01.22 일부개정
2010.03.22 일부개정
2010.06.01 일부개정
2012.04.05 전부개정
2012.09.27 일부개정
2012.10.30 일부개정
2013.02.27 일부개정
2013.09.09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23 일부개정
2014.02.10 일부개정
2015.03.31 일부개정
2015.08.18 일부개정
2015.10.27 일부개정
2015.12.23 일부개정
2017.10.26 일부개정
2018.01.31 일부개정
2018.03.21 일부개정
2018.06.28 일부개정
2018.07.20 일부개정
2018.08.30 일부개정
2018.09.30 일부개정
2018.12.27 일부개정
2021.04.28 일부개정
2022.10.05 일부개정
2022.11.29 전부개정
2023.03.14 일부개정
2023.09.27 일부개정
2024.02.01 일부개정
2024.06.25 일부개정
2024.07.30 일부개정
2024.0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1조(총동아리연합회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약칭 연세대학교 총동연, 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으로는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약칭 YONSEI G.S.C.U.)라 표기한다.

제2조(총동아리연합회의 소재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소재로 한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제3조(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

본회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회원의 역량을 모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동아리 사회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선도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총동아리연합회의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자치기구: 분과위원회,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동아리
4. 특별기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총동아리연석회의

제5조(총동아리연합회의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아리 자활을 위한 활동
2. 동아리 간 유대를 위한 사업
3. 동아리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4.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5. 기타 동아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절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등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본교)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재학생이면서 통상적으로 소관 기관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하되, 본회에 정식 등록된 단체만을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생, 국내외 타대학에서 본교로 수학하러 온 교환학생, 미래캠퍼스 학생, 어학당 학생 등은 본교 학부과정 소속 재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중앙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2. 국제캠퍼스 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
3. 단과대학 동아리(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4. 일반동아리(기타)

② 본조 제1항제1호의 중앙동아리의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등록되며 요건에 따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구분한다.

③ 본조 제1항제2호의 경우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야 등록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활동에 관련한 제반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④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⑤ 제6조제1항제1호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의결기구의 기본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결기구의 위계)

-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위계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순서로 한다.
- ②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결기구의 의장)

본회의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각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 ① 각 의결기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결위 구성원은 재적 구성원에서 제한한다.
- ③ 회의 중 본조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각 의결기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기구의 사무)

의결기구의 사무처리는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의결기구는 해당 사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기구의 기록 및 공개)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은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7조(의결기구에 관한 세칙)

기타 각 의결기구에 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절 동아리 총회

제18조(동아리 총회의 지위)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9조(동아리 총회의 권한)

동아리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토론 및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제20조(동아리 총회의 구성)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동아리 총회의 의장)

- ①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동아리 총회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동아리 총회의 소집)

- ① 동아리 총회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한다.
- ② 동아리 총회 소집은 집회 7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집회 3일 이전에 소집을 안건과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동아리 총회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25조(동아리 총회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동아리 총투표

제26조(동아리 총투표의 지위)

동아리 총투표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제27조(동아리 총투표의 권한)

총투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28조(동아리 총투표의 투표권)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 중 총투표 투표인단으로 등록된 사람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29조(동아리 총투표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총투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30조(동아리 총투표의 실시)

- ① 동아리 총투표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 ② 동아리 총투표 실시는 투표 10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투표 5일 이전에 실시를 안건과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동아리 총투표의 성립 요건)

동아리 총투표는 총투표 투표인단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32조(동아리 총투표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총투표의 안건은 투표한 투표인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3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지위)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제34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 활동 계획 심의 및 의결
2.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
3. 결산 심사
4. 동아리 총회 소집 요구
5.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탄핵 총회 상정안 심의 및 의결
6. 집행위원회 체계 및 인선 인준
7. 집행위원회 해임 의결
8. 중앙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등록 인준
9. 준동아리의 정동아리 승격 인준
10. 중앙동아리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11. 집행위원회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12. 기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3.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자
4.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
5.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

제36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장)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5호의 경우 제61조제1항을, 제34조제11호의 경우 제129조의3제6항을, 징계의 불복에 따른 징계 무효 안건의 상정은 해당 조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소집)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5월, 9월, 12월 말에 소집한다. 단, 전후 7일 이내의 소집은 정기회의로 인정한다.
- ③ 임시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한다.
- ④ 정기회의의 소집은 집회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 ⑤ 임시회의의 소집은 집회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39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40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사 진행)

- ①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소속된 단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논의 및 표결 후에 안건에 관련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발언은 가능하다.
- ② 의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량한 참석자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의사 진행에 협조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2회의 권고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의장은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본조 제2항에서 퇴장당한 참석자가 동아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석 처리한다.

제42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공결)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공결로 정의한다.
-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정당하고 증명 가능한 사유로 결석을 사전 통보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직계존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경조사
 2. 국가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
 3.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4.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
 5.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중요한 일정이 동아리 대표자회의 일시와 중복될 때
 6. 기타 의장이 인정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의 사전 통보는 동아리 대표자회의 공고된 개회시간 3시간 전까지 통보한 것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임인 정보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와 함께 의결권 위임의 의사를 밝힌 것을 말한다.
 1. 수임인의 성명

2. 수임인의 학번
3. 수임인의 연락처
4. 수임인의 소속 단위 내 직책

④ (삭제)

⑤ (삭제)

⑥ 의결권 위임의 수임인 자격은 본회에 등록된 임원에게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회에 등록된 임원이 아닌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동아리 회원도 수임인이 될 수 있다.

⑦ (삭제)

⑧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공결 시 수임인이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출석하고 사전 통보 및 의결권 위임 절차에 문제가 없을 때 해당 단위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⑨ 의장은 사전 통보 및 의결권 위임 과정에 있어 전자문서를 통한 절차를 도입하는 등 위임 절차에 있어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출결)

- ① 제42조에 의거하여 공결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출석, 지각, 조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석에 관한 기록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삭제된다.
 1. 공고된 개회시간 후 15분 이내: 출석
 2. 공고된 개회시간 후 15분 초과 45분 이전: 지각
 3. 공고된 개회시간 후 45분 초과: 결석
 4. 회의의 모든 안건표결이 처리되기 전에 퇴장: 조퇴
- ③ 지각이나 조퇴를 합쳐 3회가 되었을 때에는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④ 6개월 이내에 지각과 조퇴를 거듭한 경우에도 본조 제3항과 같다.
- ⑤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수임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4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익명성)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 ② 의장은 본조 제1항이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 즉각 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본조 제1항이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본조 제3항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다.
- ⑤ 익명성 침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있다.
- ⑥ 의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 방식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인준받아야 한다.
- ⑦ 공식적으로 단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회의의 구성원은 이에 관한 안건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⑧ 익명성 침해가 발생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7일 이내에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5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참관)

본회의의 회원은 누구나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5절 동아리운영위원회

제46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지위)

동아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심사 및 의결기구이다.

제47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구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및 검토
2.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기구의 결정
3. 예산 심의
- 3의2. 동아리 총회 소집 요구
4.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5. 중앙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심사
6.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일반등록 심사
7. 준동아리의 정동아리 승격 심사
8. 중앙동아리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9. 정기 지원금에 대한 배분 심사
10. 동아리운영위원회 단위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의 결정
11. 기타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제48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2. 각 분과위원장
3.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제49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

- ①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인 경우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50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11월 선거 종료 직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선거 종료 시까지

제51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에 판단에 따라 개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임시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장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52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3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4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의결 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 및 공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내용은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 보호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에 따라 참관이 제한될 수 있다.

제57조(동아리운영위원회 일사부재의의 원칙)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동일한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항에 관한 새로운 사실 혹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논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제58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위)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위된 때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결위 이외의 사유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다음 각 호의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된다.

1. 다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60조(총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 및 의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의무를 진다.

1. 본회를 대표하며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 및 실시할 수 있는 권한
2.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
3.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책임
4. 동아리 징계, 회칙 개정안, 예산 집행, 기타 중요 안건 발의 권한
5. 본회의 집행위원 임명 및 해임 권한
6. 본회 회원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할 의무
7. 본회 회원의 의사의 민주적 수렴과 이에 성실히 수행할 의무
8. 차기 총동아리연합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수인계를 할 의무
9. 기타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제61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본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안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탄핵안 상정 요건은 제143조제3호를 준용한다.
-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은 안건 상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면 당사자는 탄핵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심의 및 의결한다. 이때,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2조(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결위된 때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아리운영위원 혹은 집행위원 중 1명을 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이때, 임기는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63조(집행위원회의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63조의2(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4조(집행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총괄 하에 본회 모든 사업의 집행을 맡는다.
- ②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사업 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사업 중 시설 및 공간,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재무, 법무 등 전문적·기술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부 사안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위원회의 의무)

- ①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집행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66조(집행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 ① 집행위원회 체계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집행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67조(집행위원의 해임)

집행위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67조의2(집행위원회의 감사)

집행위원회는 제6장의2에 의한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8조(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69조(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70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간선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본회 회원으로서 동아리운영위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전직 동아리운영위원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제70조의2(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2학기 정기 선거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 선거가 모두 종료되고 7일 이내에 구성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이 모두 결위된 때
 3.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이 탄핵된 때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단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분과위원회 위원장단 전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동아리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은 차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후보자 정보 · 투표 방식 · 투표 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71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체계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72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이 아닐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73조(분과위원회의 지위)

분과위원회는 소속된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74조(분과위원장단)

-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 ②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7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76조(분과위원회의 회칙)

분과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절 중앙동아리

제77조(중앙동아리의 지위)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자치기구로서 회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구분한다.

제78조(중앙동아리 대표자)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79조(준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신규등록을 통해 준동아리가 된 동아리는 2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등을 통해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된 동아리는 1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 ②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발언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 ③ 준동아리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④ 준동아리는 모든 정동아리가 자치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자치공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⑤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 ⑥ 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0조(정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동아리만이 본회로부터 정기 지원금과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받는다.
- ③ 승격 절차를 통해 정동아리로 승격된 동아리는 준동아리의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 ④ 정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중앙동아리의 회칙)

중앙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절의2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제81조의2(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지위)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국제캠퍼스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1조의3(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81조의4(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

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81조의5(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제8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지위)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지부를 두며 본회 회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3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국제캠퍼스 동아리 지위를 얻는다.
- 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계획서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 명단(단, 한 단과대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 ③ 등록 절차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제84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국제캠퍼스 Y-Plaza 내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5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징계)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가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징계 처리할 수 있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징계와 관련된 조항은 제6장제2절과 관련된 조항을 준용한다. 단, 중앙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 ③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경고 2회 누적 시 마지막 경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되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의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제86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회칙)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절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제87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지위)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각 단과대학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8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권한 및 의무)

- 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단과대학 동아리 활동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불가피한 경우 필요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에 선거 등의 일부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9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

- 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을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90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의무)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와 총동아리연석회의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를 진다.

제5절 단과대학 동아리

제91조(단과대학 동아리의 지위)

단과대학 동아리는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자치기구이다.

제92조(단과대학 동아리의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동아리는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6절 일반동아리

제93조(일반동아리의 지위)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교내 동아리를 말한다.

제94조(일반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로 인정되는 동아리, 학회 등을 의미한다.
- ② 일반동아리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계획서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발기인(회원)의 명부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일반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일반동아리의 업무 및 권한)

일반동아리는 해당 일반동아리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96조(일반동아리의 회칙)

일반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특별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와 동아리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

제9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제99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00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10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제10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3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타)

- ① 기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 ② 이외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제2절 법제위원회

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

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

-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하
- 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

- 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 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
- 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 ⑦ 법제위원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입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에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

제107조(법제위원장단)

- ① 법제위원장단은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은 법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법제위원장단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로 한다.
- ④ 법제위원장단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법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 선출하고 이를 동아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 선출된 법제위원장단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108조(법제위원회 회의)

- ① 법제위원회의 의장은 법제위원장이 맡는다. 법제위원장이 결위 시 부법제위원장이 맡는다.
- ② 법제위원장단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③ 회의는 일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④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법제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3절 총동아리연석회의

제109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지위)

총동아리연석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활동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제110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역할)

총동아리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체 동아리 활동에 관한 협의
2. 각 단위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결정
3.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에 관한 보고
4. 기타 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 단위에 관련된 사안의 협의

제111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

- ① 총동아리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2. 동아리운영위원
 3.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대표자는 총동아리연석회의의 배석자가 된다.

제112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회의)

- ① 총동아리연석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로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4분의 1의 요구 혹은 의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④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총동아리연석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

제112조의2(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지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종료 이후 업무의 연속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112조의3(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역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총동아리연합회의 업무와 성과의 보고
3. 총동아리연합회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4.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업무 보조
5.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 부과한 징계의 근거와 내용의 보존
6.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징계의 근거와 내용의 보존
7. 그 밖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112조의4(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구성)

- ①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결위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 ③ 부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 중 1인이 맡는다. 다만,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아닌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위원이 맡는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동아리운영위원 혹은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선 선거운동본

부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맡는다.

- ⑤ 본조 제4항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다만,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 위원 전원을 위원장의 지명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잃게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 해산 시까지 해당 직위를 유지한다.
- ⑧ 본조 제7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그 즉시 해당 직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여 신임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제112조의5(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설립)

- ① 인수위원회는 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종료 3일 전까지 동아리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설립해야 한다. 제112조의4제8항의 신임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인수위원회는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구성된다.

제112조의6(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회의)

-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수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2조의7(동아리 대표자회의로의 보고)

위원장은 선거 종료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인수인계 사항에 관해 보고한다.

제112조의8(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해산)

인수위원회는 제112조7의 보고가 종결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6장 심사

제1절 등록 및 승격

제113조(신규등록)

준동아리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신규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4조(신규등록 절차)

- ① 2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다만, 구비서류 미비에 한해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진행한다.

② 구비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신규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신규등록이 인준된 동아리의 구비서류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15조(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한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2년간 결산안 1부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6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7. 동아리 지원금 사용 계획서 1부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9. 발기인(회원)명단 1부

9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9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한다.

10. 발기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11. 중앙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

11의2. 중앙동아리 등록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 중앙동아리 대표자 5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제116조(재등록)

중앙동아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7조(재등록 절차)

① 매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의 인준을 통해 재등록하며, 그 대상은 중앙동아리에 한한다.

②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 마감 30일 전에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재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③ 재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다만, 구비서류 미비에 한해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진행한다.

- ④ 구비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재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 ⑤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 ⑥ 재등록이 인준된 동아리의 구비서류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 ⑦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1시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주의 처리한다.
- ⑧ 신청 서류 제출 기한 1시간 이후부터는 제출 연장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본 제출 기한으로부터 1주일을 넘길 수 없으며, 제출 연장 기한에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경고 처리한다.
- ⑨ 본조 제8항의 기한마저 초과하여 제출한 동아리는 탈퇴 안건 대상 동아리가 된다.
- ⑩ 권고 2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 신청 서류를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자진 탈퇴 의사로 간주하여 탈퇴 처리한다.

제118조(재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단체(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서 1부
-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 3. 회칙 1부
- 4.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5. 대표활동계획서 1부
- 6. 최근 1년간 결산안 1부
-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 6의3. 반드시 최근 1년간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 7. (삭제)
- 8. 회원명단 1부
- 8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 8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 9.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제119조(승격)

- ① 준동아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재등록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는 준동아리 모두를 대상으로 승격을 심사하되 그 자격은 제79조제1항에 의거한다.

제120조(승격 절차)

- ① 승격 절차는 동아리운영위원회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소집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 ③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승격 인준안을 상정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 ⑤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1조(등록 및 승격의 기타)

기타 등록 및 승격에 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절 징계 및 포상

제122조(징계 알림)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가 적용된 동아리에게 3일 이내에 징계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사항을 징계 반영 이후 첫 대표자회의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징계 대상 동아리는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3조(징계 유형 및 통칙)

- ① 징계 유형에는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강등, 탈퇴가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시정 요구, 의결을 통해 주의와 경고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강등과 탈퇴를 징계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전환한다.
- ⑥ 주의 및 경고 부과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주의 및 경고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해당 동아리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 5. 본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의2(시정 요구)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시정 요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시정 요구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여부를 의결한다.
4.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내용을 의결한다. 이때, 시정 요구 내용은 본조 제1항의 사유에 한한다.
- ⑤ 시정 요구를 받은 동아리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4조(주의)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의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대표자회의 지각 또는 조퇴 3회 누적
 2. 대표자회의 결석 1회
 3.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기한 초과 시
 4.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앞서 제출기한까지 선거인단 미제출 시
 5.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총투표 기간에 선거인단 중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을 시
 6.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선거인단의 수가 최소인원에 미치지 못할 시
 7.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25조(경고)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경고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2. (삭제)
-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26조(강등)

- ① 강등 안건 대상 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2. 재등록 구비서류가 미흡했을 시
 3. 경고 3회 누적 시
 - ② 강등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을 상정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강등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동아리운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 3의2. 의결 과정에서는 강등 안건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와 관련된 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 및 소명자료 배포를 할 수 있다.

5.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결이 될 때에는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어 일반동아리가 된다.
7. 부결이 될 때에는 경고 1회를 부여한다.
- 7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경고 1회 부여에 불복 시,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경고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8. 본항 제7의2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경고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탈퇴)

- ① 탈퇴 안건 대상 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연장기한 초과 제출 시
 2.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시
 3.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거나 도박이나 폭력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 ② 탈퇴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안건을 상정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탈퇴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동아리운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 3의2. 의결 과정에서는 탈퇴 안건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와 관련된 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 및 소명자료 배포를 할 수 있다.
 5.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결될 때에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7. 부결될 때에는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 7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강등에 불복할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8. 본항 제7의2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8조(징계 효력 및 삭제)

- ① 주의는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 ② 경고 1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정기 지원금을 5만원 삭감한다.
- ③ 경고 2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15만원 삭감한다. 다만, 본조 제2항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의2 정기 지원금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기 지원금의 반으로 삭감한다.
- ④ 경고 3회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다.
- ⑤ 경고는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 ⑥ 탈퇴 처리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자치공간을 14일 내로 반

환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책임 하에 강제 집행한다.

⑦ 경고 3회 누적으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 정동아리는 강등 안건의 가결에 의하여 준동아리로 강등된 경우, 경고 3회를 삭제한다.

⑧ 경고 3회 누적으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는 강등 안건의 부결에 의하여 경고 1회가 부여된 경우, 기존의 경고 3회를 삭제한다. 이는 경고 무효 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29조(포상)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는 동아리에 대하여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재등록 신청 서류 평가가 우수할 경우
2. 확인 가능한 공적으로 인하여 대내외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포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제129조의2(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 ①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동아리운영위원(단,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위원을 겸직하는 동아리운영위원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 1인과 감사위원을 둔다.
- ③ 감사위원은 본조 제1항의 동아리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9조의3(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감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감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감사 구비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 절차에 있어 증빙이 부족한 항목의 수와 그 액수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집행위원회 징계의 안을 상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⑧ 감사위원회는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 절차와 기준 등을 집행위원회에 올바르게 적용할 의무를 진다.
- ⑨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로 인한 집행위원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29조의4(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2. 임기 종료일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3.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결산안 1부
- 3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 3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 3의4.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4. 연간 예산안 1부

제129조의5(집행위원회 감사 절차)

- ① 매년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로의 보고를 통해 진행하며, 그 대상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한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제출 마감 30일 전에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 절차를 공고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감사한다.
- ⑤ 구비서류와 감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제출하며,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29조의6(집행위원회 감사에 따른 징계)

집행위원회 감사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요구
2. 시정문 작성 요구
3. 환수 요구

제7장 선거

제130조(선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보통, 평등, 간접, 비밀, 자유선거로 한다.

제131조(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진다.

1.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 당 최소 30인에서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2. 국제캠퍼스 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당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의 회원
3.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당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제132조(피선거권)

- ①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 3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적생
 2.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8개월 이상 구성원으로 속한 자
- ② (삭제)

제133조(선거 시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 ② 자치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제134조(보궐선거)

- ① 9월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 ③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135조(재선거)

- ① 사유를 불문하고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재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 ③ 재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136조(선거의 기타)

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137조(수입)

- ① 수입은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②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 ③ 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 ④ 각 사회단체의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138조(회계 연도)

본회의 예산은 4분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제1분기: 당선 확정 공고 직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9조(예산)

- ① 예산은 본회의 수입으로 구성하며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편성한다.
- ② 예산은 본회의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반기별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③ 예산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140조(동아리 지원금)

본회의 동아리 지원금은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1조(결산)

- ①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 ② 결산은 매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142조(이월)

- ①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개시 시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꾸리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예산의 잉여금이 0원 미만일 경우, 전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
- ② 이월 전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대 집행위원회가 책임지고 지급하되, 불가피할 경우 후대 집행위원회가 이월 받는다.

제9장 법제

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

제144조(회칙 개정안의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 구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45조(회칙 개정안의 의결)

- ① 회칙 개정안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중 하나에서 의결한다.
- ②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1. 동아리 총회에서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2. 동아리 총투표에서 총투표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
 3.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제146조(회칙의 정리)

- ① 회칙의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② 정비에 관한 기준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인한 법령 정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제147조(회칙의 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48조(세칙의 정의)

- ①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위임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②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149조(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①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150조(회칙 및 세칙의 해석)

- ① 회칙 및 세칙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법제위원회가 해석하고, 해석례를 작성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해석례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결의된 경우에만 공인된다.
- ③ 회칙 및 세칙을 해석할 경우, 본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회칙 및 세칙 이외에 자치기구의 회칙 등의 경우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법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51조(소급적용 여부)

- ① 본회 회원의 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회칙 적용은 행위 완료 시점 당시의 회칙에 따른다.
- ② 누적된 징계의 효력은 회칙의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제152조(회칙의 흡결)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의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교 규정이나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위 법규,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72조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이 아닌 사유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3년 12월에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본 회칙의 공포 당시 법제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 106조에도 불구하고 회칙의 개정을 이유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며,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선임을 진행한다.

제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정족수 가산에 대한 특례) 본 회칙의 공포를 통해 신설되는 단위인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해서는 제13조, 제35조제4호, 제48조제3호, 제111조제1항4호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각 의결기구의 의사 정족수 가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